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◆ 노사분규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감소

- 2005년 12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(표 1 참조).
 - 분규발생건수는 281건, 분규참가자수는 117,686명, 근로손실일수는 839,109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459건, 184,521명, 1,181,969일보다 크게 감소
 - 근로손실일수는 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.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일)

	2003. 12. 20	2004. 12. 20	2005. 12. 20
노사분규 발생건수(개소)	316	459	281
분규참가자수(명)	132,562	184,521	117,686
근로손실일수(일)	1,285,370	1,181,969	839,109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자료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◆ 고용보험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- 노동부는 11월 16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2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비정규직·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
 - 계약직,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할 계획임.
 - 훈련비용에 더하여 임금의 일부(최저임금한도)를 추가지원하고,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함.
 - ※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(일반근로자 80%),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%(일반근로자 50%) 지원 검토 중
 -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(54세 이상자에게 최대 6년간 지급)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
 - 연공급 임금체계나 직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기업이 기존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지원
 - 고령자, 여성, 장애인의 작업편의를 위해 작업공정 및 사무환경 등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·개선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
 -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
 - 종래에는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.
 - 전직지원장려금의 경우 모든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고용조정 근로자 이외에 이직예정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, 소요비용의 3/4(중전 2/3)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 - 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·능력개발사업을 개발·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.
 -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
 - 실업(구직)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한 개인별 재취업 계획수립의 지원을 고용안정센터의 의무로 함.
 - 재취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담보

-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7만원으로 유지되던 구직급여의 기초임금 일액상한을 8만원(14.3%)으로 인상할 예정(실수령액은 8만원의 50%인 4만원)
- ※ 이 경우, 구직급여의 월수령액이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2005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,136천원을 약간 상회하게 되며, 이에 따른 2006년 추가재정소요는 약 671억원(전체 실업급여 예상액 2조 3,030억원의 2.8%)에 이를 것으로 추정
-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혜택부여
 - 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범위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 하되, 직업훈련수요를 감안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
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가능
 -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.

◆ 육아 및 사산 보호휴가 실시

- 노동부는 12월 20일, 유산·사산휴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(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힘).
 -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, 60일, 90일의 범위 내에서 건강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.
 -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혹은 사산 후 30일까지
 -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혹은 사산 후 60일까지
 -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혹은 사산 후 90일까지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◆ 비정규 입법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

- 민주노총은 12월 1일과 2일, 8일에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한 총파업을 진행
 - 민주노총 지도부는 ‘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’를 위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

총파업 및 결의대회 등을 추진

- 특히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각각 1만 6천명(민주노총 주장 6만명), 4천 8백명(민주노총 주장 2만명)이 총파업에 참여함.
- 한편 사립학교법의 여당 단독처리에 반발하는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처리는 2006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.

◆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

-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12월 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, 정부는 12월 11일 10시를 기해 긴급조정을 결정함.
 - 노조는 임금총액 기준 6.5%와 상여금 50% 인상을 요구한 반면, 사측은 기본급 2.5% 인상 및 성과급제도 합의조건으로 상여금 50% 인상을 주장하여 협상결렬 후 파업돌입
 - 정부는 대한항공이 수출입 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업으로 인한 운항차질도 커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긴급조정 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
 - 민주노총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이 노조의 파업권을 위축시키고,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, 정부를 강력히 규탄

주요노동일지

(2005. 11. 21~12. 25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11. 22		· 민주노총: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기자회견 및 농성돌입	·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: 단협 결렬로 파업돌입
11. 23		· 전국향운노련: 상용화 및 향만 특별법 저지 결의대회	
11. 24			·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: 파업조합원 전원 업무복귀
11. 25			· SK(주)노조: 200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
11. 26		· 민주노총: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	
11. 28		· 덤프연대: 도로법 개정 쟁취를 위한 덤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	
11. 30			· 하나로텔레콤: 명예퇴직 시행 등 현안문제 잠정합의 · 금속노조 현대금속지회: 2005년 임단협교섭 합의 타결
12. 1		· 민주노총 법쟁취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	
12. 2			·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: 시한부 파업종료
12. 5	· 한국노동연구원: 분쟁해결기법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		
12. 6			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: 200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
12. 8	· 노동부: 제2차 노사대토론회		· 대한항공조종사노조: 파업돌입 선언
12. 9		· 민주노총: 우리농업 사수,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범국민대회 개최	· GS칼텍스(주): 노사화합 선언식 개최
12. 11			· 대한항공조종사노조에 긴급조정 결정 공표
12. 15	· 한국노동연구원: 2005년 주요업종 임금·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토론회 개최		
12. 20			·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: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개최
12. 22			· 방송사 비정규직지부 KBS분회: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 돌입